

**교육감 규정서 D-150 개정 -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및  
뉴욕시 75 학군 위원회의 위원 선출 절차**

**I. I.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의 주제 및 목적 설명**

교육감 규정서 D-150 은 특수교육 위원회 (CCSE) 및 75 학군 위원회 (D75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출 절차를 규정한다. 다음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1) 후보 자격 요건이 업데이트 되어 후보는 반드시 현재 교육청이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특수교육 서비스 받고 있고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2) 자격요건은 학부모가 CCSE 직위 입후보를 위한 지원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 신청서 제출 시점에 CCSE 봉사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IEP 를 갖고 있어 자격을 갖춘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IEP 를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후보 자격 요건이 업데이트 되어 D75 위원회 입후보 자격 요건은 D75 위원회 직위 입후보를 위한 지원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5) 신청서 제출 시점에 D75 위원회 봉사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75 학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자격을 갖춘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75 학군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교육감 규정 D-125 를 고려하여 CCSE 및 75 학군 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상충 규정을 갱신한다. (7) CCSE 및 75 학군 위원회 후보자는 하나의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 이상에 지원할 수 있다. (8) CCSE 후보자는 IEP 를 갖고 있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9) 현재 75 학군 위원회 후보자는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75 학군 학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10) 학부모 권고 투표가 CCSE 및 D75 위원회 선출 절차에서 삭제되었다. (11) CCSE 후보자 포럼 절차가 업데이트 되어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담당부(FACE)의 조직적인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었다. (12) D75 위원회 후보자 포럼 실시 절차가 업데이트 되어 D75 회장 위원회 참여가 강화되었다. (13) CCSE 선출 규정이 개정되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7 인의 후보자가 조건부 선출되며 75 학군 이외의 학군은 CCSE 에 1 인 이상의 위원을 가질 수 없으며 D75 는 CCSE 에 최대 2 인의 위원을 가질 수 있다. (14) 만약 75 학군 학부모 두 명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일곱 명의 후보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건부로 선출되었다면, 75 학군 외의 어떤 학군에서도 CCSE 에 1 인 이상의 학부모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제한 규정에 따라 이전에 선출되지 않았던 두 명의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CCSE 의 남은 두

석을 채우도록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만약 75 학군 학부모 두 명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일곱 명의 후보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건부로 선출되었다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두 명의 75 학군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16) 같은 학군 (75 학군 외) 또는 두 명 이상의 75 학군 학부모 사이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 개 이상의 의석이 총원되지 않아 CCSE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고 CCSE 에 대변되지 못한 학군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17) 같은 학교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 개 이상의 의석이 총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며 75 학군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대표가 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18) CCSE 또는 75 학군에 대한 복수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결선투표는 별도의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며 규정서의 요건에 따라 후보자가 분류된다. (19) CCSE 및/또는 75 학군 위원회에 대한 공익 옹호관 (Public Advocate)의 지명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20) CCSE 및/또는 75 학군 위원회에 공석 총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CCSE, 75 학군 위원회 또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 (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1) “가정 참여 지원실(OFEA)”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로 변경된다.

## II. 제안된 수정조항 전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본 규정 전문 및 수정조항 전문은 교육정책 패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PEP/default.htm>

## III.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 담당실, 주소, 이메일 및 전화번호.

이름: Juan J. Rosales  
소속: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  
주소: 49 Chambers Street, Room 503, New York, NY 10007  
이메일: [RegulationD-150@schools.nyc.gov](mailto:RegulationD-150@schools.nyc.gov)  
전화: 212-346-5202

## IV.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교육정책 패널의 회의 일자, 시간 및 장소.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6:00 p.m.  
Prospect Heights Campus  
883 Classon Ave.  
Brooklyn, NY 11225